「000000 전문인력양성」

20xx년 연구개발계획서

20xx. xx.

주관연구개발기관명	○ ○ ○

연구개발계획서

[] 신청용
[] 협약용

보안등급: 일반[V], 보안[]

중앙행정기관명	산업통상부	사업명	사업명	산업혁신인재 성장지원(R&D)
전문기관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내역사업명	교육훈련
공고번호	산업통상부 공고 제 0000-000호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
		연구개발과제번호		
선정방식	정책지정[] 공모: 지정공모[V] 품목공모[] 분야공모[] 자유공모[]			

기술분류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X12. 교육 및 인력양성	50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부처기술분류	X12. 교육 및 인력양성	50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연구개발과제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개발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우)	법인등록번호		
연구책임자	성명		직위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국가연구자번호	

연구개발기간	전체		YYYY. MM. DD - YYYY. MM. DD(년, 개월)	
	단계	1단계	1년차	YYYY. MM. DD - YYYY. MM. DD(년, 개월)
			2년차	YYYY. MM. DD - YYYY. MM. DD(년, 개월)
		2단계	3년차	YYYY. MM. DD - YYYY. MM. DD(년, 개월)
			4년차	YYYY. MM. DD - YYYY. MM. DD(년, 개월)
		3단계	5년차	YYYY. MM. DD - YYYY. MM. DD(년, 개월)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지방자치단체		기타()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총계												
1단계	1년차											
	2년차											
2단계	3년차											
	4년차											
3단계	5년차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기관명	책임자	직위	휴대전화	전자우편	비고	
						역할	기관유형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							

연구개발과제 실무담당자				
성명			직위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국가연구자번호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모든 의무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이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과제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신청시 직인 생략)

산업통상부 장관 귀하

앞표지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보안등급: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보안'에, 그 외의 경우 '일반'에 [√] 표시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2. 중앙행정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모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3. 전문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4.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5.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6. 공고번호: 연구개발과제 공고문 상단의 공고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7.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총괄연구개발명에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8.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9. 선정방식: 공고문에서 제시한 선정방식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10.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중 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하는 소분류를 우선순위에 따라 그 코드명과 비중을 기재합니다.
11. 부처기술분류: 중앙행정기관에서 소관 법령에 따라 입력을 요청하는 과학기술분류 중 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하는 소분류를 우선순위에 따라 그 코드명과 비중을 기재합니다.
12. 총괄연구개발명: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가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경우에 이를 총괄하는 연구개발 명칭을 기재합니다.
13.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14.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1단계로 간주합니다.
 1) 전체: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서 협약기간을 기재합니다.
 2) 단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15.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1단계로 간주합니다.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시행령 제19조 및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3)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기관이거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서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기관·단체 등이 지원·부담하는 금액이거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금액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16.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역할
 1)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수요기업)인 경우에 "수요"로 기재합니다.
 2)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수요기업이 아닌 경우에 "공동"으로 기재합니다.
17.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역할 : "위탁"으로 기재합니다.
18.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의 역할(공모 시 요구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
 1) 해당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지자체"로 기재합니다.
 2) 해당 기관이 국외 연구개발기관인 경우에 "국협"으로 기재합니다.
 3)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기관인 경우에 "수혜"로 기재합니다.
 4)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컨설팅을 하는 기관인 경우에 "컨설팅"으로 기재합니다.
 5) 그 외는 "기타"로 기재합니다.
19. 기관유형
 1) 국가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국립연"으로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제외)이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부부처").
 2)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공립연"으로 기재합니다(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을 제외)가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인 경우에 "대학"으로 기재합니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에 "정부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5)「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인 경우에 "지자체 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6)「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소기업"으로 기재합니다.
 7)「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견기업"으로 기재합니다.
 8)「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 "대기업"으로 기재합니다.
 9)「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인 경우 "공기업"으로 기재합니다.
 10)「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병원"으로 기재합니다.
 11)「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경우 "전문연"으로 기재합니다.
 12) 1)부터 11)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 "기타"로 기재합니다.
20. 연구개발과제 실무담당자: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연구개발내용에 이해도가 높고 전문기관과 연구개발내용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가 가능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담당자를 기재합니다.
21. 기관장 서명: 전자서명으로 하고, 신청서 작성·제출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협약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전자서명을 날인합니다.

< 요 약 문 >

※ 요약문은 5쪽 이내로 작성합니다.

사업명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R&D)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		
내역사업명	교육훈련			연구개발과제번호				
기술분류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X12. 교육 및 인력양성	50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부처기술분류 (해당 시 작성)	X12. 교육 및 인력양성	50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연구개발과제명								
전체 연구개발기간								
총 연구개발비	총 천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천원,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천원,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천원, 그 외 지원연구개발비: 천원)							
연구개발단계	기초[] 응용[] 개발[] 기타(위 3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V]			기술성숙도 (해당 시 작성)		착수시점 기준(-) 종료시점 목표(-)		
연구개발과제 유형	인력양성							
연구개발과제 특성	인력양성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최종 목표		
	전체 내용		
	1년차	목표	
		내용	
	2년차	목표	
		내용	
	3년차	목표	
		내용	
	4년차	목표	
		내용	
	5년차	목표	
		내용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국문핵심어 (5개 이내)					
영문핵심어 (5개 이내)					

요약문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2.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3.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총괄연구개발명에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4.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5. 기술분류: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기술분류를 기재합니다.
6. 총괄연구개발명: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총괄연구개발명을 기재합니다.
7.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명을 기재합니다.
8. 전체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9. 총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총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10. 연구개발단계: 해당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단계 유형에 [√] 표시합니다.
 1)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2)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3)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4) 기타는 기초, 응용, 개발 등 3가지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11. 기술성숙도: 특정기술(재료, 부품, 소자, 시스템 등)의 성숙도로서 최종 연구개발 목표, 내용, 최종 결과물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9단계 중 해당하는 단계를 선택합니다(특정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만 작성).
 1) 기초연구단계: 1단계(기초 이론·실험), 2단계(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 정립)
 2) 실험단계: 3단계(연구실 규모의 기본성능 검증), 4단계(연구실 규모의 소재·부품·시스템 핵심성능 평가)
 3) 시작품단계: 5단계(확정된 소재·부품·시스템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6단계(시범규모의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4) 제품화단계: 7단계(신뢰성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 8단계(시험제품 인증 및 표준화)
 5) 사업화단계: 9단계(사업화)
12. 연구개발과제 유형: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자율적으로 구분한 유형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13. 연구개발과제 특성: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14.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를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15. 연구개발 내용: 연구개발과제의 내용을 1,0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16.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연구개발성과의 수요처, 활용내용,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연구시설·장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 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한 성과관리 및 자립운영계획, 수입금 관리 및 운영계획 등).

목 차

Ⅰ. 수행계획 ····· 0

1. 과제 필요성 ····· 0
2. 과제 목표 및 내용 ····· 0
3. 과제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 0
4. 성과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0

Ⅱ. 수행역량 및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 ····· 0

1. 연구개발기관 현황 ····· 0
2.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획 ····· 0

붙임 1. 000 ····· 0

붙임 2. 000 ····· 0

작성 요령 ※ *작성 요령은 삭제 요망, 작성 순서 변경·생략 불가*

- ■ 본문은 핵심 내용 위주 작성
 - * 별첨 자료 추가 가능
 - * 본문 12포인트, 장평100, 줄간격140, 돋움체 기본, 개조식 작성
 - * 용지여백 : 위쪽10, 아래쪽10, 왼쪽20, 오른쪽20, 머리말10, 꼬리말10
 - * 지정된 양식만을 사용, 작성 시 목차 및 페이지 번호 기재

Ⅰ. 수행계획

1. 과제 필요성

1) 추진 배경

○

2) 정부 정책 및 산업 · 시장 동향

○ 정부 정책

○ 산업 동향

○ 시장 동향

3) 산업인력 수요 및 공급 동향

○

4) 추진계획과의 부합성

○

작성 요령 *※ 작성 요령은 삭제 요망, 작성 순서 변경·생략 불가*

- 과제 추진 필요성을 기재
- 과제 관련 정부 정책 및 산업 · 시장 동향을 기재
- 과제 관련 산업인력 수요 및 공급 동향을 기재
 * 참고자료 :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 보고서(KIAT), 산업별 협회에서 제공되는 인력수급실태 자료 등
- 제시된 추진계획(시행계획)과의 부합성 기재

2. 과제 목표 및 내용

1) 최종 목표

○

2) 연차별 목표

< 연차별 성과목표 (전체 사업기간) >

구분	성과지표명		단위	목표					계
				'00	'00	'00	'00	'00	
필수 지표	①-1. 수혜인원수		명						
	①-2. 수혜인원 중 당해연도 신규 입학생		명						
	②배출인원수		명						
	③취업인원수		명						
	④취업률		%						
	⑤산학 프로젝트	지원과제	건						
		참여인원	명						
	⑥교과목	개발	건						
		개선	건						
자율 지표 (예시)	⑦교재개발 건수		건						
	⑧컨소시엄 참여기업		개						
	⑨취업지원 프로그램		건						
	⑩성과교류회		건						
	⑪만족도	수혜학생	%						
		컨소시엄 기업	%						
	⑫총괄위원회 운영		건						
	…								

작성 요령 *※ 작성 요령은 삭제 요망, 작성 순서 변경·생략 불가*

- 과제 비전, 목적, 최종 목표 및 성과 등을 정성적, 정량적으로 기재
- 과제를 통해 지원받는 5년 동안의 목표치를 기재
- 제시된 목표치는 평가시 반영할 예정이므로 수행 가능한 목표 설정
- 각 지표에 대한 설명은 <성과 작성시 참고사항> 참고
 * 자율지표는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설정하되 최소화하여 기재

※ 연차별 성과지표는 사업별 해당 단계에 맞춰서 활용

< 20xx년 (1차년도) >

구분	성과지표명		단위	주관연구 개발기관명	공동연구 개발기관A	공동연구 개발기관B	공동연구 개발기관C	공동연구 개발기관D	합계
필수 지표	①-1. 수혜인원수		명						
	①-2. 수혜인원 중 당해연도 신규 입학생		명						
	②배출인원수		명						
	③취업인원수		명						
	④취업률		%						
	⑤산학 프로젝트	지원과제	건						
		참여인원	명						
	⑥교과목	개발	건						
		개선	건						
자율 지표 (예)	⑦교재개발		건						
	⑧컨소시엄 참여기업		개						
	⑨취업지원 프로그램		건						
	⑩성과교류회		건						
	⑪만족도	수혜학생	%						
		컨소시엄 기업	%						
	⑫총괄위원회 운영		건						
	…								

< 20xx년 (2차년도) >

구분	성과지표명		단위	주관연구 개발기관명	공동연구 개발기관A	공동연구 개발기관B	공동연구 개발기관C	공동연구 개발기관D	합계
필수 지표	①-1. 수혜인원수		명						
	①-2. 수혜인원 중 당해연도 신규 입학생		명						
	②배출인원수		명						
	③취업인원수		명						
	④취업률		%						
	⑤산학 프로젝트	지원과제	건						
		참여인원	명						
	⑥교과목	개발	건						
		개선	건						
자율 지표 (예)	⑦교재개발		건						
	⑧컨소시엄 참여기업		개						
	⑨취업지원 프로그램		건						
	⑩성과교류회		건						
	⑪만족도	수혜학생	%						
		컨소시엄 기업	%						
	⑫총괄위원회 운영		건						
	…								

성과 작성시 참고사항 ※ 작성 요령은 삭제 요망, 작성 순서 변경·생략 불가

① 수혜인원수 : 사업기간 중 학생인건비를 지원받은 석·박사 과정 재학생

구분	수혜 요건
지원 대상	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학생 ② 다음의 학위 과정 중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a. 참여대학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생 ※ 학·석사통합과정의 경우,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석사과정으로 인정되는 학기부터 지원가능(석사과정 증빙必) b. 참여대학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생 c. 참여대학 대학원 석·박사 학위 통합과정 재학생 d. a~c의 수혜학생 중, 연구생으로 등록한 수료생(단, 박사후연구자 해당 X)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수료 등록제 또는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이에 유사한 제도로 학적 확인이 가능한 경우 ③ 전일제학생(Full-time)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같은 서류를 통해 사업장 미가입자이며 고용-피고용 관계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Full-time 학생 - 학위형 과정에서 비전일제학생(Part-time 또는 재직자)은 선발 제외
지원 기간	○ 석사 학위과정 : 4학기 내 ○ 석·박사통합 학위과정 : 10학기 내 ○ 박사 학위과정 : 8학기 내 ※ 석사과정 졸업 후 박사과정 연속 수혜받는 경우 추가 8학기 수혜 가능 예) 석사 학위 수혜 및 졸업 → 박사 학위 재입학 및 수혜 : 최대 12학기(4+8) 수혜 가능 ※ 최대 지원 기간은 개월이 아닌 학기 기준으로 산정 ※ 수료생의 경우, 수혜받은 학위과정에 따라 지원 기간 결정
유의 사항	○ 지원 대상은 수혜요건 ①+②+③을 모두 만족해야하며, 그 외 요소(예: 외국인 학생)는 수혜 불가 ※ 단, [1]전신사업에 이어 후속사업에 연속 참여 및 [2]후속 사업에 맞는 특화전공(또는 트랙) 이수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1)+(2))), 기존 수혜학생도 지원 가능 **< 당해연도 신규입학생 기준 >** ○ 선발기준 : 4학기 이상 수혜가 가능한 **당해연도 신규 입학 대학원생 모집** 원칙 ○ 유의사항 : 당해연도 전과생, 휴학 후 복학생 등은 신규 입학 대학원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대학원생 입학 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의 경우에만 신규입학생으로 인정** ○ 최소 수혜 유지 기간은 조기취업 및 조기졸업 등을 고려하여 최소 3학기 이상(석사기준) ○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 내 타 과제 간 중복 수혜 불가

② 배출인원수 : 수혜인원 중 배출 요건(학위 취득 등)을 충족하는 학생

구분	배출 요건
인정 기준	○ 특화전공(또는 트랙) 이수하여 졸업한 학생으로 이를 위한 최소 학점 및 산학프로젝트 학기제 필수 이수 등 사업 특성에 맞는 이수 조건을 달성한 수혜 학생 ※ 최소 이수 학점은 과정별 졸업학점 과반이상을 권장하나, 학칙에 의해 정함 예) 석사 졸업 필요학점 24학점인 경우 최소 이수학점은 12학점 이상 권장 ○ 성과 기준 연도는 당해연도 사업기간(당해연도 3월~차년도 2월)내 학위 취득(졸업) 여부 ※ '27년 2월 졸업자('26년 배출인원), '27년 8월 졸업자('27년 배출인원)
증빙	○ 졸업증명서 ※ 학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으로 이름, 특화전공(또는 트랙) 등 확인 가능 자료(단,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불인정)

성과 작성시 참고사항 ※ 작성 요령은 삭제 요망, 작성 순서 변경·생략 불가

③ 취업인원수(창업 포함) : 배출인원 중 산업체 등에 취업한 인력(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로 취업 증빙이 가능한 인력)

구분	취업 요건
인정 기준	○ (증빙) 취업한 회사명, 입사일, 이름,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 성과 기준 연도는 배출(=졸업) 연도 기준(당해연도 3월~차년도 2월) ※ '26년 배출 및 취업('26년 취업인원), '26년 배출 및 '27년 취업('26년 취업인원)

④ 취업률(%) : (취업인원수 ÷ 취업대상자) × 100

* 취업대상자 산식 : 배출인원수 - 취업비대상자
 예) 10명 배출(6명 취업, 2명 진학, 2명 미취업), 취업률은 6/(10-2)*100%=75%
* 취업대상자 제외 : 진학자, 입대자, 취업불가능자(수형자, 사망자, 해외이민자, 6개월 이상 장기입원자), 제외인정자(의료급여수급자, 여자군인 중 임관 전 훈련생,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교육대상자, 종교지도자 양성관련학과 졸업자, WFK사업 참여자)

⑤ 산학 프로젝트 : 산업현장에서 부딪힐 수 있는 상황(현장문제, 애로기술 극복 등)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과 학생이 함께 수행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교육과정으로 교과목 이수 필수

	내용
상세 요건	○ 정규 교과 반영 및 모든 수혜학생은 졸업 전 최소 1회 이상 필수 이수 ○ (수행 기간) 산학 프로젝트 종료일이 해당 사업기간 내 포함 필수 ○ (성과 측정기준) 1명의 학생이 다수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우, 참여인원 중복성과 인정 가능 ○ (증빙) 산학프로젝트 참여자, 기간, 내용 등 확인 가능한 자료(결과보고서, 논문, 특허 등)

수행내용	성과
A 프로젝트 참여자 : 홍길동, 임꺽정, 이대호, 손흥민	프로젝트 건수 : 2건
B 프로젝트 참여자 : 홍길동, 박지성, 류현진	프로젝트 참여인원 : 7명(O) ~~6명(X)~~

※ 프로젝트당 참여인원수는 최대 4명 권고(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인원수 조정 가능하나 산학프로젝트 챌린지 접수 시, 프로젝트당 수혜학생 4명까지 인정)

⑥ 교과목 개발·개선 : 학위과정에서 학점이 부여되는 교과목을 개발·개선한 것을 의미하며, 비학위 과정의 단기교육 교과목 등은 제외

* 개발 또는 개선된 교과목의 강의가 실제 개설된 시점을 성과로 책정(2차년도 이후)

⑦ 교재(ISBN) 개발 : 교육과정에 필요하여 개발된 교재를 의미하며, 개발 후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 : ISBN) 부여가 완료된 건만 성과로 인정

* 교재의 범위 : 전공과목 이론 및 실험실습교재, 협력기업의 요구에 의해 개발하는 교재, 교재개발 심의위원회에서 필요성을 승인받아 개발하는 교재
* 불인정 교재 : 복사물, 여러 자료를 조합한 교재, 개인적인 교육자료 등

⑧ 컨소시엄 기업 : 현장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산학 프로젝트, 현장실습 등 교육프로그램 추진에 협력하는 기업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지 않고, 전문기관과 협약을 맺지 않으며, 참여의사 확인서만 작성

⑨ 취업지원 프로그램 :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박람회, 취업컨설팅, 채용기업 발굴 등의 취업 지원 활동

⑩ 성과교류회 : 성과 공유 및 확산을 위하여 개최하는 회의, 행사

⑪ 만족도 : 학생 및 컨소시엄의 만족도

* 학생 : 당해연도 수혜인원의 본 사업 교육과정 등에 대한 만족도
* 기업 : 당해연도 컨소시엄 기업의 본 사업 산학 프로젝트 참여 등에 대한 만족도

3) 추진 내용

①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계획

①-1. 대학별 참여학과 구성 방안

구분	참여범위		운영과정	적용 시점
	참여학과	연구실 (개)		
주관연구 개발기관명	00공학과	0	0000트랙	'22년 1학기
공동연구 개발기관명	00공학과, 00공학과 00공학과, 00공학과	0	000전공	
공동연구 개발기관명	00공학과	-	0000트랙	
공동연구 개발기관명	00공학과	0	000융합과정	
공동연구 개발기관명	00공학과, 00공학과	0	0000협동과정	
			0000트랙	
공동연구 개발기관명	00공학과	-	00전공	

①-2. 교육과정 체계도 및 운영방안

-

①-3. 강사진 확보 및 인프라 활용방안

-

①-4. 대학 간 협력방안

-

② 참여학생 모집 및 지원 계획

-

작성 요령 *※ 작성 요령은 삭제 요망, 작성 순서 변경·생략 불가*

①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계획

①-1. 대학별 참여학과(부, 전공) 구성 방안
- ■ 참여범위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학과 기재
 - * 참여학과는 기존 학과(부), 신설예정인 학과(부) 및 모집정원이 분리된 전공 등을 포함
 - * 참여 연구실 단위까지 기재
- ■ 운영과정 : 대학별 운영과정 및 계획 기재
 - * 단일학과가 참여하는 경우 : 단일학과명 or 단일전공명
 - * 복수학과가 참여하여 공동트랙을 운영하는 경우 : 해당트랙명
 - * 복수학과가 참여하여 시행령 및 교내규정상 융합전공을 운영하는 경우 : 해당 융합전공명
 - * 복수학과가 참여하여 시행령 및 교내규정상 협동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 해당 협동과정명
 - * 기타 : 상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적용시점 : 과정 운영 시점 기재, 개설 예정일 경우 개설 후 적용 시작 시점 기재
 (예시 : '26년 1학기, '26년 2학기)
 - * 졸업 증명 시 특화 전공(트랙) 이수에 대한 기재 여부 제시

①-2. 교육과정 체계도 및 운영방안 : **<u>시행계획에 따른 AI 연계형 석·박사 교육과정 개발·운영</u>**
- ■ 교육과정 : 학점이 부여된 교과목, 교과목에 반영된 산학프로젝트·인턴십 등
 - * 신설예정인 학과(부) 및 모집정원이 분리된 전공 등을 포함하여 제시
 - * 교육과정 운영시점을 명시적으로 기재
 (예시 : OO대학 OO대학원 OO학과 '26년 1학기, '26년 2학기)
 - * 교육과정(커리큘럼) 운영 계획 수립 시 산업계 수요(의견) 반영 여부 기재
 - * 교육과정 변경 전 · 후 비교표 제시
- ■ 대학별 교과목 개발 및 개선 방안 기재
 - * 세부 교과목 개발 · 개선 방안 제시
 - * 교과목 개발 · 개선 시 특화 전공(트랙)과 연계성(적절성) 기재
- ■ 전문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방안 기재
 - * 기업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실무 기술역량 확보를 위한 단기 전문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방안 제시
- ■ 대학별 교육과정 체계도(커리큘럼) 및 운영 방안(중장기 로드맵) 기재

①-3. 강사진 확보 및 인프라 활용 방안
- ■ 대내 · 외 전문 강사진 Pool 구축 및 활용 방안 제시
- ■ 시설, 장비 등 인프라 확보 및 지원 방안 제시

①-4. 대학간 협력 방안
- ■ 교육과정 운영 및 교과목 개발 · 개선 등 협력 방안 제시

②참여학생 모집 및 지원 계획
- ■ 현황자료[붙임1]를 토대로 대학별 수혜인원, 졸업인원 목표 달성 가능성 기재
- ■ 학생 선발(모집) 계획 및 세부일정 기재

③ 산학 프로젝트 운영 계획

③-1. 산학프로젝트 구성 및 교과목 반영 계획

-

< 산학프로젝트 구성 계획 >

구분	프로젝트명	반영 교과목명	협력 기업		참여인원		책임자
			기업명	부담금(천원)	학생	교수	
기관명							
기관명							

< 산학프로젝트 세부내용 >

기관	프로젝트명	세부내용
기관명		
기관명		
…		

③-2. 산학프로젝트 운영 방안

-

④ 취업연계, 사례발굴 및 성과 홍보 계획

-

작성 요령 *※ 작성 요령은 삭제 요망, 작성 순서 변경·생략 불가*

③ 산학 프로젝트 운영 계획

③-1. 산학 프로젝트 구성 및 교과목 반영 계획

- 산학프로젝트 구성 계획
 - * 반영 교과목명 : 해당 산학프로젝트가 반영된(혹은 계획중인) 교과목명 기재, 없을 경우 “없음”
 - * 협력기업(매칭금-사업비 내) : 해당 산학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사업비 외 협력기업이 부담하는 금액(단,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현금 중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포함하여 작성)
 - * 협력기업(매칭금-사업비 외) : 해당 산학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연구개발비 외** 협력기업이 지원하는 금액(재료비, 장비 사용료 등)
- 산학프로젝트 세부내용 : 해당 사업과 산학프로젝트의 관련성 등

③-2. 산학 프로젝트 운영 방안

- 참여기업 모집(수요조사) 등을 포함한 프로젝트 선정 및 운영 절차, 결과 활용 방안 등 제시
- 산학 프로젝트 참여기업 및 참여학생 지원 방안 기재

④ 취업연계, 사례발굴 및 성과 홍보 계획

- 취업(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취업률 제고 방안 기재
 - * 채용기업 발굴, 취업대상 학생에 대한 컨설팅, 기업-학생 매칭 지원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시
 - * 기업-학생간 채용(취업)약정서 작성 등 컨소시엄 기업과 고용협력 체계 구축 방안 제시
- 성과교류회, 만족도 조사, 자체성과평가 등 사례 발굴 및 홍보 · 확산 방안 기재
- 수혜 · 배출 · 취업인원 및 기업 만족도 조사 등 사후관리 방안 기재

⑤ 산학협력 체계 구축 및 활성화 계획

-

⑤-1. 산학협력 체계(총괄운영위원회 등) 구축 계획

-



⑤-2. 컨소시엄 기업 구성

-

구분	컨소시엄기업 유형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기타	합계
주관연구개발기관명					
공동연구개발기관명					
공동연구개발기관명					
공동연구개발기관명					
공동연구개발기관명					

⑤-3. 산학협력 참여 및 활성화 계획

-

작성 요령 ※ *작성 요령은 삭제 요망, 작성 순서 변경·생략 불가*

⑤ 산학협력 체계 구축 및 활성화 계획

⑤-1. 산학협력 체계(총괄운영위원회 등) 구축 계획

■ 신학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각 기관의 역할, 총괄위원회 구성 등 제시(표 예시 활용)

⑤-2. 컨소시엄 기업 구성

■ 컨소시엄 기업 구성 방법, 유형 등 제시(표 예시 활용

⑤-3. 산학협력 참여 및 활성화 계획

■ 컨소시엄 기업 등 산업계 참여 방안 제시

■ 교육과정 개발·운영, 학생 선발 및 취업 연계, 산학 프로젝트 운영 등 산업계 수요 반영 및 참여 방안 제시

4) 수행 일정

○

작성 요령 ※ *작성 요령은 삭제 요망, 작성 순서 변경·생략 불가*

■ 추진 내용과 부합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

3. 과제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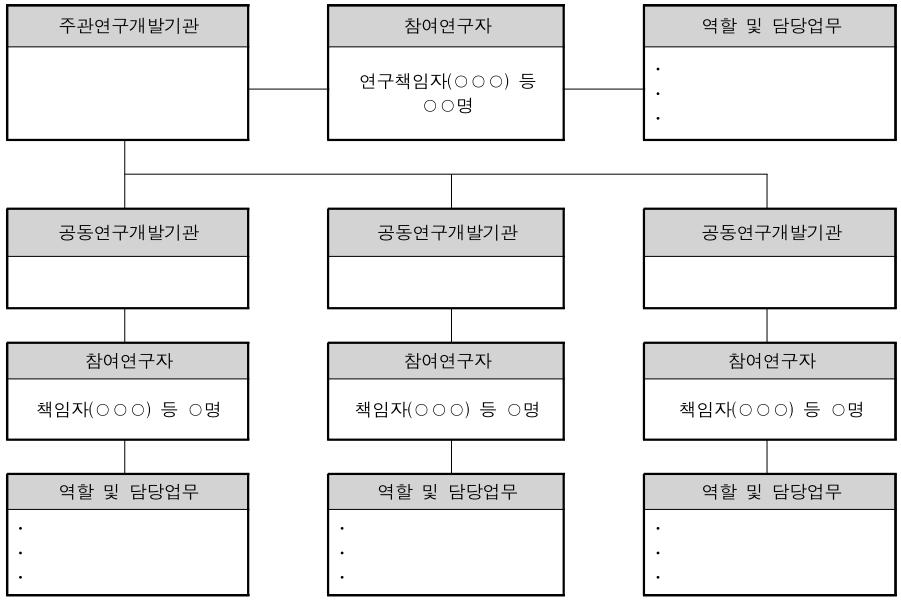
1) 추진전략·방법

○

작성 요령 ※ *작성 요령은 삭제 요망*

■ 과제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

2) 추진체계



작성 요령 ※ *작성 요령은 삭제 요망*

■ 컨소시엄 구성 및 기관별 역할 분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4. 성과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1) 성과 활용방안

○

작성 요령	※ 작성 요령은 삭제 요망
▪ 예상되는 성과와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기재	

2) 기대효과

○

작성 요령	※ 작성 요령은 삭제 요망
▪ 과학・기술적, 경제・산업적, 사회적 측면에서 기대효과・파급효과 등을 기재	

5. 안전 및 보안조치 이행계획 *(신청시 제출 불필요)*

1) 안전조치 이행계획

○

2) 보안조치 이행계획

○

3) 그 밖의 조치사항 이행계획

○

II. 수행역량 및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

1. 연구개발기관 현황

1) 연구책임자 등 현황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가. 인적사항

개인	국문		국적	
	영문		국가연구자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나. 학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취득연월(최근 순으로 작성)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교수
yy.mm~yy.mm				
yy.mm~yy.mm				
최종학위 논문명(해당 시):				

다. 경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간	기관명	직위	비고
yy.mm~yy.mm			
yy.mm~yy.mm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세부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 당시 소속기관	연구개발기간 (참여한 기간)	역할: 연구책임자/연구자	비고 (신청/수행중/완료)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 인력양성 목적 과제 포함

마.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논문/저서)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등록번호 (ISSN)	비고 (피인용 지수)
			yy			
			yy			

바.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특허/프로그램 등)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자 수	비고

사. 그 밖의 대표적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실적명	내용요약	실적연도
			yy
			yy

아. 연구개발기간 동안 외국의 정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협약 시에만 제출합니다)

지원・지급 출처 (외국 정부/기관/단체 등)	지원・지급 사유 (연구 수행/노무・자문 제공 내역 등)	지원・지급 기간	지원・지급 내용 (인력/시설/보수 등)	연구개발과제와의 관련 여부
		yy.mm.dd~yy.mm.dd		
		yy.mm.dd		

(2)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해당 시 작성)

가. 인적사항

개인	국문		국적	
	영문		국가연구자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나. 학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취득연월(최근 순으로 작성)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교수
yy.mm~yy.mm				
yy.mm~yy.mm				
최종학위 논문명(해당 시):				

다. 경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간	기관명	직위	비고
yy.mm~yy.mm			
yy.mm~yy.mm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세부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 당시 소속기관	연구개발기간 (참여한 기간)	역할: 연구책임자/연구자	비고 (신청/수행중/완료)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 인력양성 목적 과제 포함

마.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논문/저서)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등록번호 (ISSN)	비고 (피인용 지수)
			yy			
			yy			

바.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특허/프로그램 등)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자 수	비고

사. 그 밖의 대표적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실적명	내용요약	실적연도
			yy
			yy

아. 연구개발기간 동안 외국의 정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협약 시에만 제출합니다)

지원・지급 출처 (외국 정부/기관/단체 등)	지원・지급 사유 (연구 수행/노무・자문 제공 내역 등)	지원・지급 기간	지원・지급 내용 (인력/시설/보수 등)	연구개발과제와의 관련 여부
		yy.mm.dd~yy.mm.dd		
		yy.mm.dd		

(3) 참여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

가. 참여연구자 현황

성명	국적	소속 기관	직위	국가 연구자 번호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신규채용 구분 (해당 시 작성)	시간 선택제 근무 구분 (해당 시 작성)	참여연도				총 참여기간 (개월)
					최종 학위	전공	취득 년도				1단계		n단계		
											1년	n년	1년	n년	

나. 연구지원인력 현황(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성명	국적	소속 기관	직위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신규채용 구분 (해당 시 작성)	시간 선택제 근무 구분 (해당 시 작성)	지원연도				총 지원기간 (개월)
				최종 학위	전공	취득 년도				1단계		n단계		
										1년	n년	1년	n년	

(4)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관계 기관(해당 시 작성합니다)

※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나 사용하지 않는 기관(지방자치단체, 수혜기관 등) 또는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지 않으나 연구개발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한정하여 작성합니다.

가. 기관명: (역할:)

책임자	성명	국문		국적	
		영문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실무 담당자	국문				
	영문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2)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 실적

(해당 시 작성하며, 작성 시에는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항목 적용이 가능합니다.)

(1) 연구개발과제와 연관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합니다)

연구개발기관명 (소유권자)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

(2)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수행 실적(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합니다)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기관명 및 역할(주관/공동)	연구개발기간 (참여기간)	수행내용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비고 (수행중/완료)
		yy.mm.dd~yy.mm.dd (yy.mm.dd ~yy.mm.dd)			
		yy.mm.dd~yy.mm.dd (yy.mm.dd ~yy.mm.dd)			

*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5년을 초과하더라도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 또는 (4)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기재해야 합니다.
* 인력양성 목적 과제 포함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합니다)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기술이전 유형	기술실시계약명	기술실시기관명	기술실시발생일	기술료	기술료 누적 징수액

(4)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합니다)

(단위: 천원, 달러)

연구개발기관명	사업화 방식[1]	사업화 형태[2]	지역[3]	사업화명	내용	업체명	매출액		매출발생 연도	기술 수명
							국내	국외		

* 1」 기술이전 또는 자기실시 중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2」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 개선, 신공정 개발, 기존 공정 개선 등에서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3」 국내 또는 국외 중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에 등록된 것이어야 합니다.

3) 연구시설・장비 보유현황(해당 시 작성합니다)

보유기관	연구시설・장비명	규격	수량	용도	활용시기	현물부담 반영여부 (해당 시 "○")

4) 연구개발기관 일반 현황(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계가 가능합니다)

※ 비영리기관의 경우 순번 5부터 순번 15까지의 사항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백분율)

순번	구분 \ 기관명				
1	사업자등록번호				
2	법인등록번호				
3	대표자 성명/국적				
4	기관 유형 (대학, 정부출연연, 중소기업 등)				
5	최대 주주 성명/국적				
6	설립 연월일				
7	주생산 품목				
8	상시 종업원 수				
9	전년도 매출액				
10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11	부채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12	유동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13	자본잠식 현황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자본 총계	yyyy년			
		yyyy년			
		yyyy년			
	자본금	yyyy년			
		yyyy년			
		yyyy년			
14	이자 보상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15	영업 이익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16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 지원 담당자 (※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의 연구개발과제 지원 담당을 말하며, 표지의 "실무담당자"와 다름)	성명			
		부서			
		직위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팩스			

2.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획

***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은 1페이지 연구개발비 합계 등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1) 연구개발비 지원·부담계획

(단위: 천원)

구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합 계		
단계	연차	연구개발기관	유형	현금(A)	현금(B)	현물(C)	소계(D)	현금	현물	합계(E)
				비율(A/E)	비율(B/D)	비율(C/D)	비율(D/E)			
1	1	주관연구개발기관명	협회/대학	800,000	20,000	180,000	200,000	820,000	180,000	1,000,000
				80% (A/E)	10.0% (B/D)	90.0% (C/D)	20.0% (D/E)			
		공동연구개발기관명	협회/대학							
		공동연구개발기관명	협회/대학							
		공동연구개발기관명	협회/대학							
	2									
	소계									
n	1									
	n									
	소계									
총계										

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작성 요령 *※ 작성 요령은 삭제 요망*

- 연구지원인력 인건비(C) : 비영리법인의 해당 연구부서에 소속된 자 한하여 직접비에서 행정지원인력 인건비 계상을 허용함. 단, 행정 지원인력에 대한 연구수당은 계상 및 사용이 불가하며, 직접비에서 인건비를 계상할 경우 간접비에 계상 불가
- 학생인건비(D)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시스템 사용 여부에 따라 일반/통합 나눠서 기재
 * 참고 : 본 사업은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으로「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제49조(**대학 학생인건비** 사용기준)에 근거하여 **학생인건비계상률은 총인건비계상률에서 제외**.
- 연구시설·장비비 중 통합관리비(현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비영리기관에 한해 계상 가능하며, 수정직접비(직접비 현금 총액에서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의 5% 이내로 계상할 수 있음
 *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인 경우에도 의무 계상은 아니며, 연구책임자가 적립 희망 시 계상 가능
- 연구수당(I) : 수정인건비(E2)의 10%이하로 계상 가능하며, 연구수당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7조에 따른 사유 외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 간접비(L) : 수정직접비(직접비 소계 - 직접비 현물 - 국제공동연구개발비)의 10% 이내로 계상

(1) 연구개발기관별 사용계획(총괄표)

(단위: 천원, 백분율)

비목	항목			1단계		2단계		3단계	합계
				20XX	20XX	20XX	20XX	20XX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직접비	인건비	내부인건비(A)	현금(N)						
			현물						
		외부인건비(B)	현금(O)						
		연구지원인력인건비(C)							
		소계(A+B+C)							
	학생인건비(D)		일반						
			통합관리						
	총 인건비(E1=A+B+C+D)[1]								
	수정인건비(E2=A+B+D)[2]								
	연구시설·장비비(F)		현금(P)						
			현물						
	(연구시설·장비비 중 통합관리비(현금))								
	연구재료비(G)		현금(Q)						
			현물						
	연구활동비(H)		현금(R)						
			현물						
	연구수당(I)								
	연구수당 비율(I/E2)[3]								
	보안수당(S)								
	국제공동연구개발비(T)								
	직접비 소계(K=E1+F+G+H+I+S+T)								
간접비(L)[4]									
간접비 비율(L/(N+O+C+D+P+Q+R+I+S))									
연구개발비 총액(M=K+L)									

1) 총 인건비 : 내부인건비 + 외부인건비 + 연구지원인력인건비 + 학생인건비
2) 수정인건비 : 내부인건비 + 외부인건비 + 학생인건비
3) 연구수당 비율 : (연구수당/수정인건비)*100
4) 간접비 비율 : (간접비/수정직접비)*100,
 * **수정직접비** = 직접비 소계 - 직접비(현물) - 국제공동연구개발비

(2) 연구개발기관별-연차별 사용계획

가. 주관연구개발기관명 :

(단위: 천원, 백분율)

비목	항목			1단계		2단계		3단계	합계
				20XX	20XX	20XX	20XX	20XX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직접비	인건비	내부인건비(A)	현금(N)						
			현물						
		외부인건비(B)	현금(O)						
		연구지원인력인건비(C)							
		소계(A+B+C)							
	학생인건비(D)		일반						
			통합관리						
	총 인건비(E1=A+B+C+D)								
	수정인건비(E2=A+B+D)								
	연구시설·장비비(F)		현금(P)						
			현물						
	(연구시설·장비비 중 통합관리비(현금))								
	연구재료비(G)		현금(Q)						
			현물						
	연구활동비(H)		현금(R)						
			현물						
	연구수당(I)								
	연구수당 비율(I/E2)								
	보안수당(S)								
	국제공동연구개발비(T)								
	직접비 소계(K=E1+F+G+H+I+S+T)								
간접비(L)									
간접비 비율(L/(N+O+C+D+P+Q+R+I+S))									
연구개발비 총액(M=K+L)									

나. 공동연구개발기관명 :

(단위: 천원, 백분율)

비목	항목			1단계		2단계		3단계	합계
				20XX	20XX	20XX	20XX	20XX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직접비	인건비	내부인건비(A)	현금(N)						
			현물						
		외부인건비(B)	현금(O)						
		연구지원인력인건비(C)							
		소계(A+B+C)							
	학생인건비(D)		일반						
			통합관리						
	총 인건비(E1=A+B+C+D)								
	수정인건비(E2=A+B+D)								
	연구시설·장비비(F)		현금(P)						
			현물						
	(연구시설·장비비 중 통합관리비(현금))								
	연구재료비(G)		현금(Q)						
			현물						
	연구활동비(H)		현금(R)						
			현물						
	연구수당(I)								
	연구수당 비율(I/E2)								
	보안수당(S)								
	국제공동연구개발비(T)								
	직접비 소계(K=E1+F+G+H+I+S+T)								
간접비(L)									
간접비 비율(L/(N+O+C+D+P+Q+R+I+S))									
연구개발비 총액(M=K+L)									

3) 연구시설・장비 구축・운영계획(해당 시 작성합니다)

(1)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구축비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필수로 작성합니다)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시설・장비명	현금/현물 구분	구축방식*	규격	수량	구축비용	구축기간	설치장소

* 개발, 구매, 임대, 용역 등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2) 연구시설・장비 운영・활용계획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시설명	기존/신규 구분	운영기간	비용			전담인력 수	활용계획	설치장소
				연간운영 비용	과제반영 비용	현금/현물 구분[1]			
			yy-yy						
			yy-yy						

* 1」 협약기간 내 운영・활용하는 연구시설・장비에 소요되는 현금 또는 현물을 기재합니다.

수행역량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연구개발기관 현황
 1) 연구책임자 등 현황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의 인적사항, 학력(최근 순으로 작성), 경력, 주요 연구개발 실적, 대표 논문/저서 실적,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실적, 연구개발기간 동안 외국의 정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2)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수행내용을 총괄하는 연구자의 인적사항, 학력(최근 순으로 작성), 경력, 주요 연구개발 실적, 대표 논문/저서 실적,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실적, 연구개발기간 동안 외국의 정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3) 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수행내용을 총괄하는 연구자의 인적사항, 학력(최근 순으로 작성), 경력, 주요 연구개발 실적, 대표 논문/저서 실적,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실적, 연구개발기간 동안 외국의 정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4) 참여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
 가. 참여연구자 현황: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이하 "참여연구자"라 한다)의 성명, 국적, 소속기관, 직위, 국가연구자번호,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신규채용 구분(해당 시 작성), 시간 선택제 근무 구분(해당 시 작성), 참여연도, 총 참여기간을 기재합니다.
 가) 신규채용 구분: 신규 전담연구인력인 경우 "신규(전담)",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비례한 청년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청년의무)", 연구개발기관 현금부담 감면을 위한 청년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청년추가)", 기타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기타), 신규채용이 아닌 기존 인력의 경우 "기존"으로 기재합니다.
 나) 시간선택제근무 구분: 시간선택제근무(육아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은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시간선택제로 근무)의 경우 "시간," 실습연구자(공동연구개발기관인 대학의 학사과정 중에 있는 학생으로서 방학기간 중 중소기업・중견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경우 "실습"으로 기재합니다.
 다) 참여연도(지원 연도): 연구개발과제에 1개월이라도 참여 시 해당연도에 "○" 표시합니다.
 나. 연구지원인력 현황(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작성):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함으로써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지원인력의 성명, 국적, 소속기관, 직위,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지원연도, 총 지원기간을 기재합니다.
 (5)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관계 기관(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나 사용하지 않는 기관(지방자치단체, 수혜기관 등) 또는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지 아니하나 연구개발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2)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 실적(해당 시 작성, 작성 시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항목을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
 (1) 연구개발과제와 연관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최근 5년간 실적): 연구개발과제와 연관된 지식재산권의 소유기관, 해당 지식재산권명, 출원・등록 국가,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을 기재합니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수행 실적(최근 5년간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최근 5년간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를 이전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4)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최근 5년간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3) 연구시설・장비 보유현황(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활용할 연구시설・장비 보유 현황을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기관 일반현황: 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작성 가능하며, 비영리기관의 경우에는 순번 5부터 순번 15까지는 생략하여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비
 1) 연구개발비 지원・부담계획: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등을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 기관역할은 '주관', '공동', '위탁' 중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1) 연구개발기관별 사용계획: 연구개발기관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비 항목별 총액을 기재합니다.
 (2) 연차별 사용계획: 연차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비 항목별 총액을 기재합니다.
 (3) 연구개발기관별-연차별 사용계획: 연구개발기관별로 연차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비 항목별 총액을 기재합니다.
 3) 연구시설장비 구축・운영계획(해당 시 작성)
 (1)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활용할 연구시설・장비의 구축계획을 기재합니다.
 (2) 연구시설 운영・활용계획: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구축될 연구시설의 활용계획을 기재합니다. 이 때 기존/신규 구분은 연구개발기간 시작 전에 구축이 완료된 경우 '기존'으로, 연구개발기간 중에 구축이 완료되는 경우 '신규'로 입력합니다.

[붙임 1]

최근 3년간 대학별 참여학과(부, 전공) 현황

1 OO대학교 OO대학원 OO학과(부, 전공)

① 신입생 충원 현황

연도	입학정원(명)				지원자(명)				입학자(명)				신입생 충원율 (%)
	계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	계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	계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	
20xx													
20xx													
20xx													
계													

② 재적 학생 현황

연도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계	재학생	휴학생	계	재학생	휴학생	계	재학생	휴학생
20xx									
20xx									
20xx									
계									

③ 졸업생 현황

연도	석사과정	박사과정	계
20xx			
20xx			
20xx			
계			

작성 요령 ※ *작성 요령은 삭제 요망*

- 대학별 참여학과별로 최근 3개년 현황 기재
 - 학과별 개별로 작성, 대학별 합계로 작성 불가
 - 대학정보공시 기준으로 '정원내' 현황을 작성

[붙임 2]

컨소시엄 기업 현황(총 00개 기업)

구분		참여대학명1		참여대학명2		참여대학명n	
		기업명1	기업명n	기업명1	기업명n	기업명1	기업명n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국적)							
최대주주(국적)							
기관구분 (산, 학, 연, 기타())							
기업 유형(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설립 연월일							
주 생산품목							
전년도 매출액(백만원)							
전년도 순이익(백만원)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주소							
홈페이지주소							
참여기업별 사업책임자	성명						
	부서/직위						
	사무실전화						
	휴대폰						
	FAX						
	E-Mail						

작성 요령 ※ *작성 요령은 삭제 요망*

- 담당자(실무연락책임자)의 소속부서, 성명, 전화, 주소 등의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
- 유형은「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명기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정확히 작성
- 사업자등록번호 : 중간에 - 를 포함, 총12자리를 공백없이 기재함(예. 123-12-12345)

[붙임 3]

산학 프로젝트 운영 계획

연구개발기관명	
협력 기업명	
산학 프로젝트명	
구분	관련 내용
협력 기업과의 산학 프로젝트 계획	*·공동프로젝트 기획 및 수행내용, 참여학생의 컨소시엄 기업 취업 유도 등* *·프로젝트 수행 학생 선발방법 및 프로젝트 관련 분야 교과목 교육 방안* *·프로젝트 수행 시 교과목 이외 심층학습 및 산업추세를 반영한 실용교육 추진 방안 등*
산학 프로젝트 내용	
예산안	*프로젝트 총금액 : 천원*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천원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천원* ** 예산안 합계는 [붙임6] 당해연도 프로그램별 연구개발비 중 산학프로젝트 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기대효과	*교과목, 산학협력 및 기타 등*

작성 요령 *※ 작성 요령은 삭제 요망*

- 프로젝트 건별 작성하고, 추가 항목 기술시 표 양식 추가하여 기술
- 산학프로젝트 계획·내용은 사업 분야 및 목적에 맞게 작성

[붙임 4]

국외출장 계획 *(신청시 제출 불필요)*

연구개발 기관명					
출장목적 (사업명)					
출장배경 및 내용					
출장기간	20 . . . ~ 20 . . . (일간)				
출장국가					
출 장 자	소 속	직급	성 명	성별	당해출장 담당업무
동행기관명 및 인원					

작성 요령 *※ 작성 요령은 삭제 요망*

- 학생 동반 없는 국외출장, 전시회 참관 및 네트워킹 목적 혹은 단순 MOU 체결을 위한 국외출장 등 지양

[붙임 5]

용역과제계획서 *(신청시 제출 불필요)*

연구개발기관명			
과제명			
연구책임자	사업자등록번호 : 소속기관 : oo대학교 부서 :		
	직위(급) : 성명 : 생년월일(성별) :		
용역기간		**용역과제비**	(천원)
필요성			
목표 및 내용			
수행방법			
활용계획			
용역기관 및 용역과제책임자 선정근거			

작성 요령 *※ 작성 요령은 삭제 요망*

▪ 용역과제별로 기재(용역기관 미정일 경우 미정으로 작성)

[붙임 6]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세부내역

***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세부내역은 1페이지 연구개발비 합계, 사업계획서 본문의연구개발비 사용계획 등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구성, 프로그램별 연구개발비, 기관별·비목별 연구개발비 합계가 일치하여야 함**

1.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구성

가. 과제 총괄

(단위 :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총 연구개발비		
	현금(A)	비율(A/E)	현금(B)	비율(B/D)	현물(C)	비율(C/D)	소계(D)	비율(D/E)	현금	현물	합계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합 계											

나. 과제 총괄(세부)

(단위 :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정부지원 연구개발비(현금)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총 연구개발비								
									현금								현물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간접비	합계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합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간접비	합계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총 합계																												

2. 당해연도 프로그램별 연구개발비(과제총괄) *(신청시 제출 불필요)*

(단위 : 천원)

기관명	구분	참여 연구자 인건비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학생인건비	교과목 개발 및 개선	산학 프로젝트 운영	기술동향교육 (단기교육과정)	해외산학연공동연구		연구 수당	국내 여비	그 외 (기타)	간접비	합계
								국외여비 (항공료, 체제비)	국외 여비 외					
주관연구 개발기관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소계													
공동연구 개발기관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소계													
공동연구 개발기관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소계													
공동연구 개발기관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소계													
합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합계													

* 단기교육과정 : 정규교과목 이외에 단기로 교육과정을 개설 ·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해외산학연공동연구 : 선진지식 획득을 위해 교육생이 일정기간 해외 학술연수 또는 기술연수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국외여비, 교육비 등)
* 기타 : 직접비 내 항목 외의 금액(가급적 최소화요망)

3. 기관별 · 비목별 연구개발비 사용계획(기관별, 단위 : 천원)

가. 주관연구개발기관명:

(단위: 천원, 백분율)

비목	항목			1단계 20XX 1차년도	20XX 2차년도	2단계 20XX 3차년도	20XX 4차년도	3단계 20XX 5차년도	합계
직접비	인건비	내부인건비(A)	현금(N)						
			현물						
		외부인건비(B)	현금(O)						
		연구지원인력인건비(C)							
		소계(A+B+C)							
	학생인건비(D)		일반						
			통합관리						
	총 인건비(E1=A+B+C+D)								
	수정인건비(E2=A+B+D)								
	연구시설·장비비(F)		현금(P)						
			현물						
	(연구시설·장비비 중 통합관리비(현금))								
	연구재료비(G)		현금(Q)						
			현물						
	연구활동비(H)		현금(R)						
			현물						
	연구수당(I)								
	연구수당 비율(I/E2)								
	보안수당(S)								
	국제공동연구개발비(T)								
	직접비 소계(K=E1+F+G+H+I+S+T)								
간접비(L)									
간접비 비율(L/(N+O+C+D+P+Q+R+I+S))									
연구개발비 총액(M=K+L)									

(1) 인건비(참여연구자)

인력 구분	성명	직위	급여총액 (A, 천원)	참여기간 (개월)(B)	인건비계상률 (%)(C)	합계(A×B×C/100)		
						현금	현물	계
기존/ 신규 /연구지원인력								
합계								

(2) 학생인건비(수혜학생)

세분류 (사용용도)	학위 구분	성명	학과	월급여 (A, 천원)	참여기간 (개월)(B)	인건비계상률 (%)(C)	합계(A×B×C/100)		
							현금	현물	계
학생인건비	학석통합 /석사/ 석박통합 /박사/								
합계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제40조 학위과정별 월급여 최저 기준 : 학사(130만원), 석사(220만원), 박사(월300만원), 통합과정(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 금액)
* 본 사업의 학생인건비계상률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49조(대학 학생인건비 사용기준)에 근거하여 총인건비계상률에서 제외

(3) 연구시설 · 장비비

연구개발 기관	구축 연도	연구시설·장비명	구축방식*	사용용도 (규격)	수량	구축비용 (천원)	구축(설치)일 또는 임차기간	설치장소
OO (주관)	20xx		구매/임차		1			
	20xx							
OO (공동)								

* 개발, 구매, 임대, 용역 등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
* 연구기자재 구입은 지양 (기구축 장비 활용)
* 상기 품목에 대한 장비도입계획서 별도 첨부(신청시 제출 불필요)

(4) 연구재료비

품명	용도	규격	단위	수량	단가	현금	현물	비고
OO구입비								*산학 프로젝트*
OO관리비								
OO제작비								
합계								

(5) 위탁연구개발비 : 해당없음

(6) 국제공동연구개발비 : 해당없음

(7) 연구개발부담비 : 해당없음

(8) 연구활동비

구 분	활용목적	산출내역	금액	비고
지식재산 창출 활용비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회의비				
출장비				
소프트웨어 활용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활용비				
연구실운영비				
연구인력 지원비				
종합사업관리비				
그 밖의 비용				
합계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참조
* 그 밖의 비용 :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연구실증 참여자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한다)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 주관기관은 위탁정산수수료(상시점검수수료, 그 밖의 비용) 필수 계상

(8-2) 연구활동비 - 외주용역비

외주용역명	용역내용	용역사	소요비용(천원)	용역기간(시작~종료)	결과물
				YY.MM~YY.MM	

* 상기 계획에 대한 용역과제계획서(붙임5) 별도 첨부(신청시 제출 불필요)

(9) 연구수당

구분	산출내역	비율(%)	금액	비고
연구수당				
합계				

* 수정인건비(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 지원인력 인건비 제외)의 10%이내

(10) 간접비

구분	산출내역	비율(%)	금액	비고
간접비				
합계				

* 직접비(현물 제외)의 10% 이내로 편성

나. 공동연구개발기관명:

다. 공동연구개발기관명:

라. 공동연구개발기관명:

※ 주관기관과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